

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특화단지 입주기관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〉

■ 정동만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4164호)

2026. 3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박희석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3
1. 특화단지 입주기관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	3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정동만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11. 12.
3. 회부연월일 : 2025. 11. 1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,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,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.

그런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에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1조).

Ⅲ. 검토의견

1. 특화단지 입주기관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

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3~5년 동안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제1항).

[표 1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21조(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간은 3년 이상 5 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1. (생략) <신설>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전략산업등의 영위에 소요되는 전 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
② ~ ⑧ (생략)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 제2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(중소·중

전기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)에게 설비·인프라 투자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¹⁾.

이 같은 비용지원은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특화단지로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,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, 중국의 전기요금 정책 등과 비교할 때 국내 생산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므로, 실질적인 생산비 지원 및 절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기·용수 사용량이 큰 특성으로 인해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부담이 높은 편이므로, 개정안은 초기 3~5년간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하여 국내 생산시 가격경쟁력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임.

다만, 기획예산처²⁾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시 향후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유사한 지원요구가 확산되어 재정부담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재무여건 악화, 낮은 요금 현실화율³⁾ 등을 감안해 공업용수 지원에 대해서는

1) 참고로 동법 제21조에 따른 국고예산사업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, 동법 제21조제8항(⑧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) 및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,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”을 할 수 있음.

2) (의견제출시)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

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, 동 개정안 심사시에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456

3) 지방상수도 평균 74.5%, 광역상수도 78.4%